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47 호

2003 년 12 월 5 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4호(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3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3호(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9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45호(민영주택사업시행(변경)승인고시)----- 1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4호(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1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5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8호(2004년동계부업대학생모집공고)-----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9호(주민세직권분및독촉분고지서송달불능공시송달공고)--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2호(공시송달공고)-----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3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 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4호(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시송달공고)-----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7호(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시송달공고)----- 5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2. 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4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이하“학교”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액을 합한 예산액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 지원은 1개 학교에 1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1회에 한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1. 구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인
3. 관할 교육구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자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신청) ①학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위원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집행한 기관은 정산내역을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 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 ○ 제정이유
**

-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재원으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과 관련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 인천광역시남동구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목적과 보조 기준액의 범위 규정 (안 제1조, 제2조)
 -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범위(안 제3조)
 -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구성, 임무,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8조)
 -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 *****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2. 5.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 ①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지역특성과 재활용 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과 제5조 및 제6조제4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장소,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등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배출용기의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장소, 배출요령, 배출방법등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지내 적정위치에 중간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한다.
2.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100㎡미만) : 인근 주변의 적정 위치에 중간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한다.
3. 재래시장·소규모음식점 밀집지역 : 상가번영회등을 관리주체로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별도 위탁처리 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3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조례 제11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 구청장이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배출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정한다.

1. 일반주택등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개별 분리·배출하는 지역의 수수료 부과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징수는 판매소에서 전용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주민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수수료 납부 의무자를 지정하고 공동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서 정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제1호의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개별 분리·배출하는 지역중 주민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용기에 배출하기로 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

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량별 일반용 봉투의 1당 평균 판매가격을 환산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량별 일반용 봉투의 1당 평균 판매가격에 150/100을 가산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 수납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감면 및 포상)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모범 지역, 모범업소 및 관리책임자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 또는 포상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의 중지) ①수수료를 1월이상 체납하는 사업장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규칙”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함.
- 음식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모범지역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음식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효과를 극대화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용어변경
- 음식물폐기물 거주유형별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 근거마련
(안 제2조제2항 1호 내지 3호 신설)
-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 모범지역 또는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4조)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기준(제2조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악취가 발생되거나 파리·모기 등 해충 및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중간수거용기의 용량은 충분히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넘치거나 물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간수거용기의 재질은 음식물류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손괴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중간수거용기는 위생적이고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제작 되어진 용기이어야 한다.
5. 감량의무사업장은 재활용 위탁처리업자 등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수거용기를 정할 수 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45호

민영주택사업시행(변경)승인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사업시행(변경)인가를 승인하고 동법 시행 규칙 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동아건설(주)
 - 주 소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
 - 위 치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7
 - 연 면 적 : 105,113.69㎡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1층, 5동, 677세대
4. 사업시행기간 : '04. 3 ~ '07. 8.
5. 변경내용
 - 사업주체 변경 [당초 :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영풍산업(주)
변경 : 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동아건설(주)]
 - 시공자변경 [당초 : 영풍산업(주) 변경 : 신동아건설(주)]
 - 설계자 변경 [당초 : (주)종합 건축사무소 오림
변경 : (주)원명건축사사무소]
 - 착공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 '99.12 ~ '02. 4 변경 : '04. 3. ~ '07. 8]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4호

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최근2년간 실적 미신고 업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공시송달합니다.

1. 청문일시 : 2003.12.16일(화요일) 14:00
2. 청문장소 :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3. 청문대상업체 및 사유 : (주)가영엔지니어링외 14업체(불임참조)
4. 청문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참석시)
 - 주장을 입증할 서류
5. 청문시 유의 사항
 - ① 귀 하는 청문실시 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 ② 귀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 중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정처분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 453-2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2.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공시송달대상자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가영엔지니어링	설비 인천92-12-18 가스1 93-04-06	도기봉	구월3동1110-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광원도시개발(주)	가스1 인천남동 97-27-11	이정호	구월1동1182-2 중앙빌딩3층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주)구암엔지니어링	설비 인천남동 01-12-13	윤종관	고잔동646-11 공단75블럭12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주)대림에너지	가스1 인천남동 98-27-73	박경수	만수6동1100 명원빌딩30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동방엔지니어링	설비 인천12-87	박덕성	구월4동1300-1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주)선화건설	설비 경기94-12-34	박덕철	간석4동220-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영신기공(주)	설비 인천98-12-11	이석원	고잔동636 165블럭2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주)정우엔지니어링	설비 인천92-12-33 가스1 인천남동98-27-119	이필원	구월4동1279-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정진설비(주)	설비 인천95-12-12	신상운	간석1동414-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 이내	

청문공시송달업체현황

청문공시송달대상자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용	비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진성이엔지	가스1 인천남동 01-27-1-3	서충욱	구월1동1453-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태웅개발(주)	설비 82-12-149	박영운	구월3동1371-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태종기공(주)	설비 인천남동99-12-01 가스1 인천남동99-27-30	최태규	간석3동918-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한국수도(주)	설비 서울94-12-306	김병욱	만수5동912-1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현대기계공업(주)	설비 인천남동 00-12-02	박용희	고잔동727 공단156블럭1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주)웨스텍	설비 인천남동01-12-16 가스1 인천남동01-27-1-6	이영철	논현동427-4 공단16블럭5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 의거최근2년간 실적미신고	영업정지 6월이내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5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며,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
- 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감면기한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함(안 12조)
-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안 제21조)
-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 삭제(개정전 제24조)
- 바.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부칙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 12. 23일 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453 - 2240, 224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없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

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출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 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의 ——— _____ _____ _____.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 _____ _____ _____.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u> 6~7. (생략)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세 대한 감면) (생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 부동산</u>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u>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 부동산</u>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생략)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생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 (생략)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u> 6~7. (생략)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세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u>부동산</u> 2. _____ <u>건축물</u> _____ _____ <u>부동산</u> 3. _____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생략)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

3. -----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3년간 -----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생략)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생략)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생략)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생략)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	< 삭 제 >

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생략)

제6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생략)

제26조(감면신청등) (생략)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생략)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25조(감면신청등)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8호

2004년동계부업대학생모집공고

남동구청에서는 2004년 동계 부업대학생을 모집하여 대학생에게 사회경험을 쌓는 한편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모집기간 : 2003. 12. 15 ~ 17(3일간) 09:00 ~ 17:00
- 접 수 처 : 남동구청 5층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 근무기간 : 2004. 1. 5 ~ 2. 5(25일간,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 50명 (보수 : 1일 22,000원)
- 자격요건
 - 2년제 대학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남, 여 대학생
 - 모집공고일(12월 1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내 접수시 전원 선발
 - 모집인원 초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학생은 본인아 직접 공개추첨에 참여하여 선발
 - 부업대학생 신청서 기재사항중 거주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자치행정과(☎ 453-2180)로 문의바랍니다.

2003. 12.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79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박창환외 105건, 박병철외 5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종합·양도소득할주민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3년 09월~11월 종합·양도소득세할주민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가능바, 납기를 2003. 12. 22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 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 12.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박창한		남구 용역	104005-0309 -510-3	218,580	수취인부재
2	최성우		남동 간식	104005-0309 -530-5	7,140	이사감
3	조규현		남동 구월1.	104004-0309 -510-6	89,260	수취인미거주
4	박명배		남동 구월	510-7	319,640	말소자
5	진중수		남동 구월2	510-10	6,175,950	말소자
6	송경운		남동	510-12	300,830	수취인부재
7	신영훈		남동 구월	510-20	1,099,030	수취인미거주
8	정호원		남동 구월	510-22	292,570	이사감
9	신동일		남동 구	510-25	1,374,890	말소자
10	김완수		남동 구	510-27	2,578,810	이사감
11	김형섭		남동	510-28	370,050	수취인부재
12	이성현		남동	510-29	214,550	수취인부재
13	서진산		남동 구	510-30	1,110,810	말소자
14	지종호		서울	510-32	369,550	수취인미거주
15	이정구		남동 구월2	510-35	88,020	이사감
16	배성호		남동	520-2	374,990	수취인부재
17	강경남		남동	520-3	675,950	수취인부재
18	최화심		남동 구	521-1	215,330	수취인부재
19	이명돌		남동	521-3	376,200	수취인부재
20	박치환		남동 구	521-7	230,760	수취인부재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21	김란희		남동 구	104004-0309 -521-11	231,160	수취인부재
22	권영길		남동 구월1	521-12	176,560	수취인미거주
23	박광수		남동 구	522-10	256,140	수취인부재
24	박노섭		남동 구	522-19	10,949,820	수취인부재
25	허대영		남동 간	530-6	6,097,200	수취인부재
26	김연순		남동	530-11	4,889,600	주소불명
27	이숙자		남동 간	530-16	436,560	수취인미거주
28	안정주		남동 간석	530-17	760,390	수취인미거주
29	노순이		남동	530-18	118,260	이사감
30	문광수		남동	530-28	1,458,270	수취인미거주
31	김우경		남동	530-31	156,080	이사감
32	심선하		남동 간	530-35	2,747,600	이사감
33	김상진		남동	530-37	511,070	수취인부재
34	안명자		남동 간	530-38	112,160	이사감
35	조성현		남동	530-39	211,750	수취인부재
36	김현수		남동	530-42	173,780	수취인미거주
37	박방주		남동	530-50	867,920	수취인부재
38	정미화		남동	530-52	214,150	이사감
39	진준호		남	530-53	110,900	주소불명
40	송종성		남동	530-54	53,380	수취인미거주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41	최운목		남동 간석	104004-0309 -530-57	264,290	수취인부재
42	장석만		남동	530-59	4,155,300	주소불명
43	최문수		남동 간석	530-62	347,910	수취인부재
44	김경종		남동 간석	530-64	1,328,090	말소자
45	이동우		남동 간	530-66	9,003,510	수취인부재
46	이금수		남동 간	530-75	247,620	수취인부재
47	정해운		남동 간석	530-83	217,800	수취인부재
48	김경심		남동 간석	530-89	1,088,250	수취인부재
49	안홍모		남동 간	530-99	1,568,890	수취인미거주
50	최다미		남동 간	530-100	273,870	주소불명
51	이정수		남구 관교동	540-1	456,140	수취인부재
52	전병태		남동 만수	560-2	510,650	말소자
53	김순권		남동 간	560-5	1,960,890	수취인부재
54	한부현		남동 만수	560-6	1,790,390	말소자
55	임한철		남동 만수96	560-8	1,105,500	수취인부재
56	이승재		남동 만수	560-11	268,320	수취인부재
57	박인순		남동	560-13	281,460	수취인부재
58	김동호		남동 만수	560-14	10,150,210	이사감
59	신현수		남동 만수	560-17	87,490	이사감
60	이원재		남동 만수	560-24	1,194,820	수취인부재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61	김성용		남동 만수	104004-0309 -560-31	907,980	수취인미거주
62	조선희		남동 만수	560-34	441,920	수취인부재
63	박용희		남동 만수	560-35	232,700	수취인부재
64	김영곤		남동 만수	560-41	359,650	수취인부재
65	오승용		남동 만수	560-51	250,990	수취인부재
66	최경수		남동 만수 신민	560-53	696,000	수취인부재
67	지현구		남동 만수	560-54	4,818,840	수취인미거주
68	노지훈		남동 만수	560-55	131,530	우편물 장기방치
69	장남두		남동 만수	560-60	5,228,970	수취인부재
70	전광수		남동 만수	560-70	2,044,260	말소자
71	이승미		남동 만수	560-71	374,830	수취인부재
72	우성필		남동 만수	560-72	265,090	수취인부재
73	최영준		남동 만수	560-74	286,210	수취인부재
74	김동환		남동 만수	560-80	363,170	수취인부재
75	김태영		남동 만수	583-7	777,520	이사감
76	문형필		남동 만수	583-16	254,010	수취인부재
77	강정봉		남동 만수	650-4	110,680	이사감
78	박병기		남동 만수	660-2	256,160	이사감
79	이주선		남동 만수	660-5	223,350	주소불명
80	송용섭		남동 남촌	660-7	235,850	수취인부재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81	김영환		남동 도림동	104004-0309 -660-8	106,010	수취인미거주
82	김동성		남동	660-12	100,170	이사감
83	이남순		남동 02	660-17	663,780	이사감
84	임창순		남동 도림3	660-18	77,380	수취인미거주
85	하은주		남동 남	660-19	192,410	수취인미거주
86	최영실		남동 남	660-21	119,130	이사감
87	이광재		남동 도림	660-25	102,410	우편물 장기방치
88	임무술		남동 도림	660-29	461,690	수취인미거주
89	이문희		남동 남	660-31	753,520	수취인부재
90	성승호		남동	670-3	241,330	수취인부재
91	정태용		남동 논	670-5	81,760	우편물 장기방치
92	김점임		남동	670-7	247,530	주소불명
93	이운우		남동	670-8	15,365,270	말소자
94	이창선		남동	670-14	1,460,410	수취인미거주
95	백수현		남동 논	670-16	743,980	말소자
96	주영준		남동 논	670-24	88,540	우편물 장기방치
97	공성열		남동	530-44	1,295,140	수취인부재
98	정종우		남동	530-70	629,710	수취인부재
99	이순임		남동	530-77	216,550	수취인부재
100	박영미		남동 간	530-81	1,794,410	수취인부재

2003. 9월 종합. 양도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01	김남미		남동 긴	104004-0309 -530-86	329,490	수취인부재
102	임서훈		남동 긴	530-102	435,340	수취인부재
103	김상용		연수구 연수동	560-3	1,276,970	수취인부재
104	김용훈		남동 구	510-19	63,060	이사감
105	이규성		남동 구	510-24	47,410	우편물 장기방치
106	서경순		남동 민	560-30	66,200	우편물 장기방치

11월분 소득세할 및 양도세할 주민세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방병철		남동	104004-0311 -510-13	5,766,360	수취인미거주
2	박인경		남동 구월	510-62	365,410	수취인미거주
3	심수월		남동 구월	510-72	537,600	주소불명
4	최미경		남동 구월	510-87	30,740	수취인미거주
5	최난실		남동 구월	510-127	81,540	우편물 장기방치
6	박종환		남동 간석	520-8	57,600	말소자
7	고애경		남동 구월	520-38	232,700	이사감
8	곽영재		남동	520-75	1,297,360	주소불명
9	김문정		남동	520-84	39,840	이사감
10	한형주		남동 구월	521-57	43,290	수취인미거주
11	윤우영		남동	521-66	73,480	우편물 장기방치
12	김상철		남동	522-30	75,930	수취인미거주
13	유윤근		남동	522-37	14,500	이사감
14	김형경		남동	530-1	392,590	수취인미거주
15	이철구		남동	530-27	825,190	주소불명
16	김창현		남동	530-82	483,310	수취인미거주
17	엄지현		남동 1	530-97	410,350	이사감
18	조구형		남동	540-48	495,310	수취인미거주
19	민병이		남동	?	77,130	이사감
20	김제태		남동 간석	550-22	846,280	수취인미거주

11월분 소득세할 및 양도세할 주민세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21	김옥녀		남동 간	104004-0311-550-27	1,935,990	수취인미거주
22	김종석		남동 간	550-87	338,160	수취인미거주
23	권태근		남동 간	551-31	212,940	수취인미거주
24	김충석		남동 간	551-45	489,360	수취인부재
25	박수철		남동 간	551-55	834,520	말소자
26	손현길		남동 간	551-95	72,340	우편물 장기방치
27	김은숙		남구	551-132	12,130	수취인미거주
28	박병근		남동 간	551-133	369,510	수취인미거주
29	김관식		남동	560-10	234,520	수취인미거주
30	김기남		남동	560-39	35,410	우편물 장기방치
31	신철민		남구	560-83	457,950	수취인미거주
32	임명순		남동	560-117	11,060	우편물 장기방치
33	최병화		남동	570-30	1,911,540	이사감
34	이기재		남동	570-48	72,340	우편물 장기방치
35	정용환		남동 만수	570-79	921,580	수취인미거주
36	전현미		남동	570-98	680,000	수취인미거주
37	박희순		남동	570-103	12,430	이사감
38	오순자		남동	580-3	2,189,700	수취인미거주
39	허한규		남동	580-22	8,830	이사감
40	강효근		남동	580-29	55,900	수취인미거주

11월분 소득세할 및 양도세할 주민세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41	김중호		남동 면	104004-0311 -580-73	89,150	수취인미거주
42	김선영		남동 1	582-33	432,510	이사감
43	곽병두		남동 만	582-76	704,420	수취인미거주
44	전웅식		충북청원군	650-29	668,640	수취인미거주
45	김복순		남동 남촌	660-25	69,270	우편물 장기방치
46	김해용		남동	660-68	25,460	수취인미거주
47	홍의용		전남무안군 망운	660-75	488,850	수취인미거주
48	김행자		서구 9	660-121	1,705,620	이사감
49	박혜숙		남동 2 주	670-12	61,080	우편물 장기방치
50	정옥성		남동	670-49	441,060	수취인미거주
51	엄경섭		남동 3	670-54	17,470	우편물 장기방치
52	이을수		남동	670-69	166,580	말소자
53	김기일		남동	670-86	87,530	이사감
54	이은영		남동	670-110	13,000	우편물 장기방치
55	유미선		남동	670-119	101,970	수취인미거주

인천광역시남동고공고 제2003-58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및제29조를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 12.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3. 12. 2. ~ 2003. 12. 12.

2.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내용 : 과태료 10 만원

나. 처분의 원인 : 2003.8.6. 09:26경 부천시중양로 한일전기조명앞 에서
인천7도2880자동차의 봉인이 탈락된 사실 적발

다.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84조(법제10조제3항)

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처분내용	납기일	주 소	비 고
정 예근	38.09.24	과태료10만원	2003.11.28.	인천 남동구 남촌동 573-2한일맨션104동지1호	

3.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84조제4항 규정 의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구청에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재판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체납의 예 에 따라 귀하의 재산등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교통과 차량관리담당 ☎032-453-27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 [대통령령제18003호(2003. 6. 23)]되어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임.

3. 본문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 12. 2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2002-453-2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4호

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6항및10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여 소재지불명(이사등)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

행정처분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오성설비	기계설비공사업 인천남동01-12-07	오원배	구월동1381-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의거국세채납으로관허사업제한	영업정지(6개월) 2003.11.19-2004.05.18	
대길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7-02-06 철근콘크리트 서초97-10-06	공홍식	만수동108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의거국세채납으로관허사업제한및동법제9조사항의주기적신고미실시	영업정지(6개월) 2003.11.19-2004.05.18	
종진건설(주)	토공사업 부평01-28-1-2 철근콘크리트 부평01-10-04	최종철	만수동1080-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의거국세채납으로관허사업제한	영업정지(6개월) 2003.11.19-2004.05.18	
대협토건(주)	토공사업 인천연수00-02-01 철근콘크리트 인천연수00-10-01	고명린	고잔동632-1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의거국세채납으로관허사업제한	영업정지(6개월) 2003.11.19-2004.05.18	

2. 행정처분일: 2003.11.19

3. 행정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6항및10항의국세채납및주기적신고 미실시

4.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2.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87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6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여 소 재지불명(이사등)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

2. 행정처분일: 2003.11.25.

행정처분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강진토건(주)	철근콘크리트 서울10-94 토공사업 서울02-115	김창석	구월동1264-11 (수정빌딩605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경신기업	철 물 인천92-11-26	이인구	고잔동669-12 공단92블럭13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경원건설(주)	토공사업 서울92-02-207 철근콘크리트 서울92-10-268	박병원	간석동267-2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경인종합목재	창 호 인천94-08-02	김정웅	만수동710-4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공명개발(주)	미장,방수 인천92-03-05	이항희	만수동860-2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극동기업(주)	철 물 서울11-38	장태호	고잔동728-10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금해물산(주)	석 공 인천95-04-03	최득진	고잔동641-3남동공 단55블럭4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남민건설	도 장 인천92-05-07 철 물 인천94-11-07	신기남	간석4동39-18 한국상가201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대광산업(주)	철 물 경기92-11-5	김정근	논현동430-6공단17 블럭7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대성	창 호 인천08-45 철 물 인천11-1	김웅래	고잔동729-7공단15 블럭8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행정처분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덕천건설(주)	실내건축 인천98-01-4	안백기	간석동292-4 원빌딩401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도성개발(주)	창 호 인천94-08-07	김중국	만수동987-13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동주토건(주)	토공사업 인천94-02-37	최종률	구월동1314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두성건설산업(주)	비 제 인천07-5	윤석호	고잔동630산업유통 센터B동244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명성토건	철근콘크리트 인천97-10-46 상하수도 인천98-13-31	이승재	구월동1139-8우남빌 딩502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밀레니엄건설(주)	토공공사업 서울96-02-129 철근콘크리트 서울96-10-161	이형재	구월동279-3개나리 빌딩4층2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보림개발(주)	미장,방수 인천96-03-01	곽병주	구월1동1157-11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보림조경	조경식재업 인천95-18-01	황만규	만수동931-17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삼도석재(주)	석 공 인천92-04-7	차상윤	구월동1256-14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세운개발(주)	토 공 인천94-02-33 철 콘 인천94-10-33	김원석	간석1동554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수정장식	실내건축 인천96-01-10	김미자	만수동916-11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신라건설(주)	철 콘 인천94-10-44	조대형	구월동1219뉴인천빌 딩301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신일토건(주)	토 공 서울92-02-266 철 콘 인천94-10-39	김중세	만수동1082창대장터 상가1동208호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행정처분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신한건설	철 물 인천92-11-7	김복한	고잔동공단2단지156 블럭16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아이시스산업(주)	실내건축 인천98-01-06	이영근	고잔동656-8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영신건설(주)	미장,방수업 인천92-03-4 철 콘 인천92-10-9	이상열	구월3동1108-18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영신석재 공영	석공 인천92-04-3 철콘 인천92-10-31	김영준	간석동113-16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예창	실내건축 인천92-01-1	김혁동	구월동1471-1하나 빌딩5층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웅비건설(주)	토공 인천92-02-24 포장 인천94-16-01	백상기	간석동240-1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정원기계(주)	철물 인천92-11-18	박기원	고잔동667-10공단 95블럭 11롯데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천성건설(주)	철콘 경남92-10-17 0	진병준	만수동969-1 왕송빌딩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태산공영	창호 인천94-08-03	차준호	구월2동1244-14 RG빌딩 B1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티보셀	시설물 남동99-30-5	이근천	만수동967-8거신 빌딩7층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주)한성개발	토공 인천02-100 상하수도 인천13-33	김윤규	구월4동 1285-16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한우건설(주)	토공 인천92-02-4 철콘 인천92-10-17	김도현	만수5동912-15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혜영건설(주)	토공 인천92-02-24	권경하	구월4동1292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실시	건설업등록말소	

행정처분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금강종합석 건	석공 인천95-04-2	유봉근	만수동353-4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동주토건	토공 충남94-02-23	이병 회 최관재	구월3동1110-13	건설산업기본법제9 조제4항의거주기적 신고미 실시	건설업등록말소	

3. 행정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6항의거주기적신고 미 실시

4.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 ☎032-453-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2. 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